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 안내

<2026.3.1., LA한국교육원>

1. 기본 요건

- 학교 위치 : 미국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내
- 교육 대상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자녀
 - ※ 재외국민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최소 규모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K-12학년)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 ※ 단, 추후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상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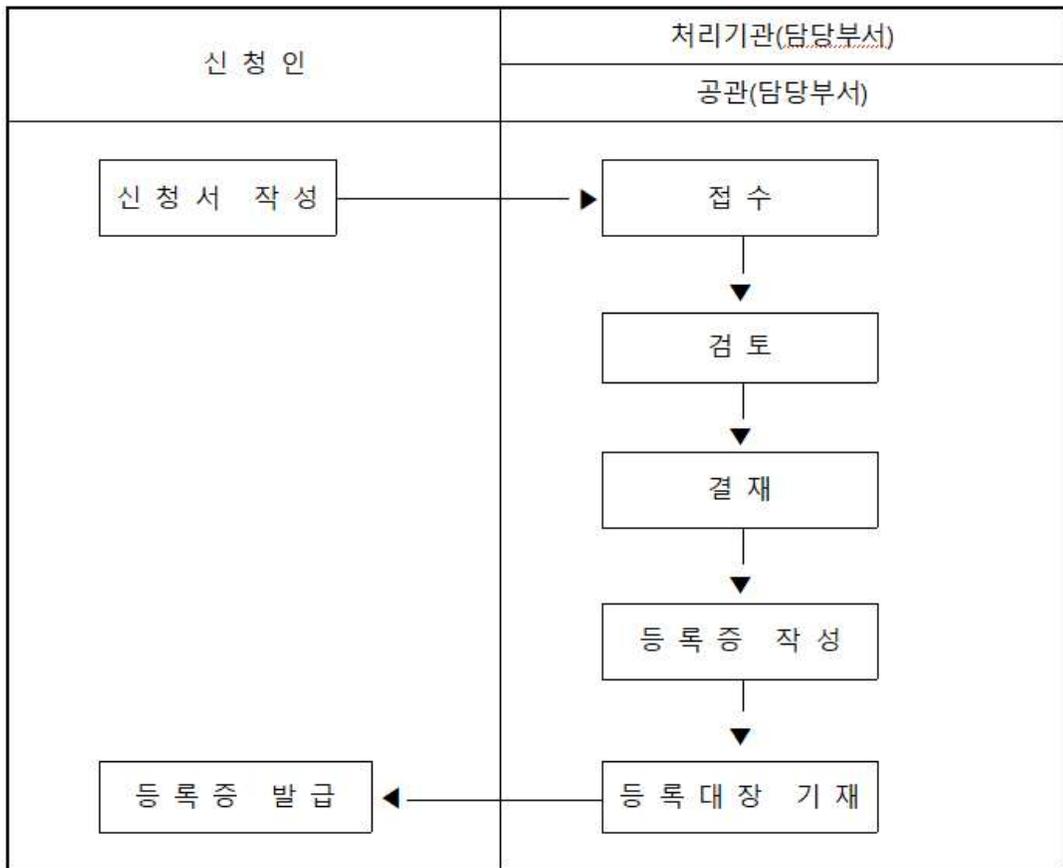
2. 제출 서류

- ① [붙임1] 재외교육기관 등록신청서
- ② [붙임2] 한글학교 운영 현황
- ③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④ 시설·설비현황 (교실 크기 및 개수, 컴퓨터 대수 등) 및 증명 사진
- ⑤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사진 혹은 그림)
- ⑥ 재산 목록 및 그 입증서
- ⑦ (한글학교 소유 시설일 경우) 시설 소유자 증명 서류, 혹은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시설의 사용에 관한 임차계약서 사본
- ⑧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정관 혹은 규약
- ⑨ [붙임3] 대표자 현황
- ⑩ [붙임4] 한글학교 인적사항
- ⑪ [붙임5] 교원 명단
- ⑫ [붙임6] 학생 명단
- ⑬ 학교 운영 증명 서류 (언론보도, 온라인광고, 교회주보 등)
- ⑭ 학교 운영 증명 사진 (개강식, 종강식 등 행사 사진)

3. 등록 절차

- 신규 한글학교는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LA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담당자(ymlee.kecla@gmail.com)에게 제출함
 - ※ 등록 시, 별도 비용 없음
- LA한국교육원은 제출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함

< 등록증 발급 절차 >



- 등록증 발급 후, LA한국교육원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의 「재외동포 교과용 도서 및 교재 신청 통합시스템」에 신규 등록을 대리 신청하고, 생성된 ID 와 PW를 해당 한글학교에 전달함

- 등록증을 발급받은 신규 한글학교 관계자는 LA총영사관 한글학교 지원금 담당자(korean-la@mofa.go.kr)에게 연락하여 지원금 관련 안내를 받음

<참고> 한글학교? 한국학교? 어떤 명칭이 맞나요?

이름 등록 시, 명칭은 **00한글학교**가 맞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된 비정규학교를 의미합니다.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4. 유의 사항

-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동포사회에 분쟁을 야기하는 단체, 교육내용이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저해하는 단체 등은 등록 불가
- 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 “00교회 부설” 등과 같은 이름은 지양하고, 고유의 영문이름과 함께 정하여 사용 (약어사용 지양)
- 학교장 변경, 장소 이전, 휴교, 폐교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교육원에 사전통보
 - ※ 휴·폐교의 경우 “재외교육기관(단체) 휴·폐교 신고서” 제출 필수
- 수익을 위한 수업료 과다 징수, 지원금 사용의 문제, 외국인 대상 학원식 운영, 노인 대상 문화센터식 운영, 허위서류 제출 시 등록 취소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